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수 신 : 각 회원

(경 유)

제 목 : 화물자동차 과적행위 단속 강화 통보

1. 전국화련 제253호(2014.5.20)와 관련입니다.

2.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자동차 과적 단속 강화 및 과적근절 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함을 발표하였는바, 각 회원사에서는 운전자에게 적극 홍보하여 과적관련 범규준수 등으로 과적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단속기간 : 2014. 6. 1부터 연중 단속(6, 7월 집중단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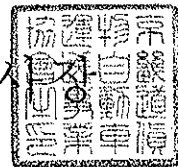
나. 단속장소 : 고속도로, 국도 과적검문소

다. 단속대상 : 과적을 위한 불법개조, 적재중량초과, 적재불량

라. 처벌내용

- 불법개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적재중량초과 : 20만원 이하의 벌금(범칙금 5만원)
- 적 재 불 량 : 20만원 이하의 벌금(범칙금 5만원) 끝.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업무과장 김진성

업무차장

총무부장 최원배

전무이사 염상빈

협조자

시행 경기화협-제475호 (2014. 5. 22.)

접수

우 440-805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63(송죽동) 4층 www.kgta.or.kr

전화 031-243-5221 전송 031-251-9770 / jsk7276@nate.com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수 신 : 각 회원

(경 유)

제 목 : 낙하물 신고 포상제 시행 알립

1. 한국도로공사 교통처-1992호(2014.5.14) 및 전국화련-제249호(2014. 5. 19)와 관련입니다.

2.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화물자동차의 적재물 낙하로 인한 차량피해예방을 위해 「낙하물 신고 포상제」를 2014. 6. 1(일)부터 시행하오니, 회원님들께서는 운전자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신고 포상제 시행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적재물 낙하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업무과장 김진성

업무차장

총무부장 최원배

전무이사 염상빈

협조자

시행 경기화협-제474호 (2014. 5. 22.)

접수

우 440-805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63(송죽동) 4층 www.kgta.or.kr

전화 031-243-5221

전송 031-251-9770 / jsk7276@nate.com